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1252
----------	-------

제안연월일 : 2025. 7. .
제안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8건의 법률안 중 먼저 발의된 35건의 법률안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년 11월 15일)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년 2월 11일)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건의 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건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소위심사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4148	김민석의원	2024. 9. 20.	2024. 11. 15. (2025. 2. 18. 2025. 4. 23.)
	5196	박선원의원	2024. 11. 4.	2025. 2. 11. (2025. 2. 18. 2025. 4. 23.)
	6278	장철민의원	2024. 12. 6.	
	6285	서영교의원	2024. 12. 6.	
	6294	권칠승의원	2024. 12. 9.	
	6369	김재원의원	2024. 12. 10.	
	6370	강득구의원	2024. 12. 10.	
	6375	백혜련의원	2024. 12. 10.	
	6384	조국의원	2024. 12. 11.	
	6387	이용우의원	2024. 12. 11.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6399	정을호의원	2024. 12. 11.	

건 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소위심사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6402	이광희의원	2024. 12. 11.	2025. 2. 11. (2025. 2. 18. 2025. 4. 23.)
	6403	정성호의원	2024. 12. 11.	
	6437	민병덕의원	2024. 12. 12.	
	6440	부승찬의원	2024. 12. 12.	
	6453	박홍배의원	2024. 12. 12.	
	6459	박정현의원	2024. 12. 13.	
	6485	이정문의원	2024. 12. 13.	
	6499	이인영의원	2024. 12. 16.	
	6501	민형배의원	2024. 12. 16.	
	6516	백승아의원	2024. 12. 16.	
	6543	황희의원	2024. 12. 16.	
	6544	채현일의원	2024. 12. 16.	
	6552	홍기원의원	2024. 12. 17.	
	6569	용혜인의원	2024. 12. 17.	
	6708	권향엽의원	2024. 12. 19.	
	6759	이수진의원	2024. 12. 19.	
	6795	추미애의원	2024. 12. 20.	
	6811	한창민의원	2024. 12. 20.	
	6814	위성곤의원	2024. 12. 20.	
	6843	임미애의원	2024. 12.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7104	강선우의원	2024. 12. 30.	*소위원회 직접회부 2025. 2. 11. (2025. 2. 18. 2025. 4. 23.)
	7238	임광현의원	2025. 1. 6.	
	7380	고민정의원	2025. 1. 9.	
	7383	서영석의원	2025. 1. 9.	
	7753	이강일의원	2025. 1. 23.	
	7840	박상혁의원	2025. 1. 24.	
	9663	홍기원의원	2024. 4. 9.	

나. 먼저 발의된 3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2. 18.)에서 심사하였고, 이상 3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4.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6. 25.)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3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 군경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국회가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 안건 등에 대한 국회 심의권 등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비상계엄 시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근거한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계엄법의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학계에서 제기된 위헌설 및 개정필요설 등을 고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 제77조제3항에서 비상계엄 시 특별조치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이 현행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비상계엄 시를 제외하고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 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 라.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함(안 제11조의2 신설).
- 마.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의3 신설).
- 바.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 사.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아.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

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자.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차.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수색·거주·이전·언론”을 “수색·언론”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 이</u> <u>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u> <u>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u> <u>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u> <u>작성하여야 한다.</u>
⑥ (생 략)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 告)하여야 <u>한다.</u>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 ----- ----- ----- <u>하고, 통고할 때에는</u> <u>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u> <u>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u> <u>야 한다.</u>
② (생 략)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 포·구금(拘禁)·압수· <u>수색·</u> <u>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u>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 ----- ----- <u>수색·언</u> <u>론</u> -----

·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생략)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략)

<신설>

<신설>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서 삭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제14조(벌칙)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생략)	<u>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4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